



## 학교폭력 예방

### 1.

#### 학교폭력이란

학교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<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>

##### 따돌림이란?

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

##### 사이버 따돌림이란?

인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,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,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

### 2.

#### 학교폭력 유형

유형	학교폭력예방법 관련	예 시 상 황
신체 폭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해</li> <li>• 폭행</li> <li>• 감금</li> <li>• 약취 · 유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(감금)</li> <li>▪ 신체를 손,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(상해, 폭행)</li> <li>▪ 강제(폭행, 협박)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(약취)</li> <li>▪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(유인)</li> <li>→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, 때리기,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</li> </ul>
언어 폭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명예훼손</li> <li>• 모욕</li> <li>• 협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(성격, 능력, 배경 등)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,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(명예훼손)</li> <li>→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,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</li> <li>▪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(생김새에 대한 놀림, 병신,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)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,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(모욕)</li> <li>▪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(죽을래 등)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(협박)</li> </ul>
금품 갈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</li> <li>▪ 옷,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</li> </ul>

유형	학교폭력예방법 관련	예 시 상 황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</li> <li>▪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</li> </ul>
강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강제적 심부름</li> <li>• 강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속칭 빵 셔틀, 와이파이 셔틀, 과제 대행, 게임 대행,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(강제적 심부름)</li> <li>▪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(강요)</li> <li>→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,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</li> </ul>
따돌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따돌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,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</li> <li>▪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, 빈정거림, 면박주기, 겁주는 행동, 골탕 먹이기, 비웃기</li> <li>▪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</li> </ul>
성폭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폭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폭행·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, 성기에 이물질 삽입하는 등의 행위</li> <li>▪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</li> <li>▪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,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</li> </ul>
사이버 폭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이버 따돌림</li> <li>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, 채팅,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</li> <li>▪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, SNS,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</li> <li>▪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, 위협하는 내용, 조롱하는 글, 그림,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</li> <li>▪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, 음향,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</li> </ul>

### 3.

## 학교폭력 처벌 유형

학교폭력을 저지르면, 나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무엇보다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.  
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

### 1.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

가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

나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, 보복행위 금지

다. 학교에서의 봉사: 화단정리, 교실의 교구정리, 화장실 청소,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.

라. 사회봉사: 복지시설,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.

마.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: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바. 출석정지: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. 이 경우,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, 누적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.

- 특히,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'출석정지'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.

<<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>>

- ▶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·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
- ▶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
- ▶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

- 사. 학급교체: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,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
- 아. 전학: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.
- 자. 퇴학처분: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,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.  
단,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**유의 사항**

-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, 학교에서의 봉사, 사회 봉사, 출석정지,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- 이 경우, 가해학생의 부모님(보호자)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**4.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대처법**

**가. 피해학생의 경우**

- 1)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.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.
- 2)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피해사실을 은폐, 축소하지 마세요.
- 3)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.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.
- 4) 도피하지 마세요. 문제회피, 침묵, 전학,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.
- 5) 아이를 응원해주세요. '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'라며 지지해주세요.
- 6) 도움을 요청하세요. 먼저,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주세요.
- 7) 증거를 확보하세요. 문자메세지, 이메일, 음성녹음, 상해진단서 등

**나. 가해학생의 경우**

- 1) 부인하지 마세요.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.
- 2)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.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.
- 3) 정당화하지 마세요.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.
- 4) 포기하지 마세요.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.
- 5)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. 아이와 친구,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.
- 6) 진심으로 사과하세요.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.
- 7) 화해,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. 전문가 상담,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.

**5.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**

- 1) 117 학교 폭력 무료 상담 및 신고
  - ① 1 :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
  - ② 1 : 청소년 흡연을 세계 1위
  - ③ 7 : 학교폭력 자살률 1위
- 2) 온라인 신고 : [www.safel182.go.kr](http://www.safel182.go.kr)
- 3) 스마트폰 앱 : 안전드림
- 4) 문자 : #0117



# 아동학대 예방

## 1.

### 아동학대란

구분	정의	비고(관련법률)
아동학대	아동(18세 미만)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, 유기 및 방임	아동복지법제3조
아동학대범죄	상해, 폭행, 특수폭행, 폭행치사, 유기, 학대, 아동학사, 체포, 감금, 협박, 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, 강간, 유사강간, 강제추행, 준강간, 준강제추행,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,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, 명예훼손,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, 모욕, 주거침입(주거·신체 수색)의 죄, 강요, 공갈, 재물손괴 등	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
학교폭력	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 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	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

## 2.

###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 학대

-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.
-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(방임)은 아동학대입니다.  
예)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,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
-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.  
예)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
-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.
-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(건강)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.  
예)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

## 3.

### 아동학대 예방 노력

-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.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생활을 합니다.
-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.  
※ 학교 Wee클래스나 각 남원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(☎635-8530~2)
-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.
-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## 4.

### 훈육이란

- 훈육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

■ 훈육 시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(평정심 유지 상태)여야 함

#### ■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

-아동의 행동에 대한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 위한 상태에서의 체벌

-아동이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것

(예: 아동이 다른 형제나 친구를 때렸을 때, “너도 맞아 보고 아파봐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것이다”

라는 복수의 의도로 체벌을 하는 것)

#### ■ 부적절한 정서반응의 예

-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 모욕적, 경멸적, 비난, 비아냥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

■ 잘못된 행동(≠고의성 없는 아동의 실수)을 교정하는 방법이어야 함

■ 훈육의 환경은 합리적이어야 함

-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

-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상황은 비합리적임

(‘맞을래’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이나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등)

■ 훈육 시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, 맨손이라 할지라도 상흔(멍, 손자국, 긁힘 등)이 발생하거나 머리,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안 됨

## 5.

### 아동학대 신고요령

※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.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(아동복지법 제 26조)

#### 가. 1 STEP

-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
-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
-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
- 학대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

#### 나. 2 STEP

-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
- 아동을 안정시키고,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
-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

#### 다. 3 STEP

-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
-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
-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
-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
-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

◆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(☎635-1391~4)

◆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(☎129 / ☎1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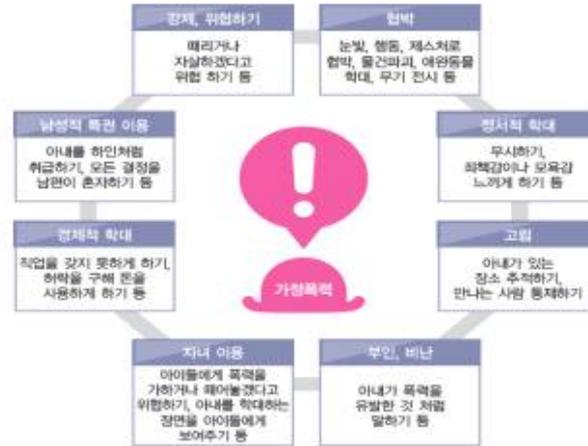


# 가정폭력 예방 연구

## 1.

### 가정폭력이란

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이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



## 2.

### 가정폭력의 예방방법

#### 가. 화 조절하기

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,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,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.

#### 나. 스트레스 관리하기

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폭력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.

#### 다. 효과적으로 대화하기

우리나라 속담에는 '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'라는 말이 있습니다. 따뜻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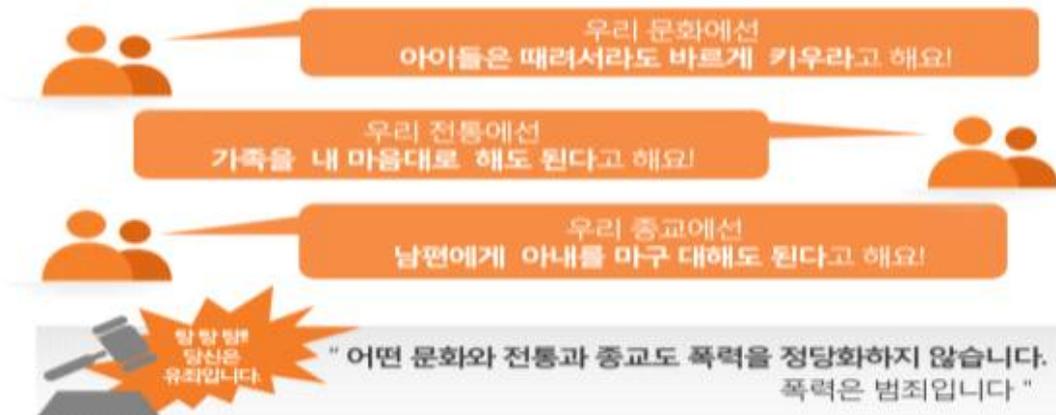
#### 라. 칭찬 한마디 하기

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.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.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.

### 3.

## 가정폭력의 대처방법

- 1)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, 신용카드, 통장,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.
- 2)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.
- 3)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둡니다.
- 4)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.



### 4.

##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





# 안전사고 예방 연수

## 1.

### 교통사고 예방

- ▶ 횡단보도, 건널목 신호등 지키기, 우측통행 준수 지도
- ▶ 인라인 스케이트 및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지도 (보호장구 착용)
- ▶ 어린이 보호 구역(School Zone)에서의 교통안전 지도 및 홍보

## 2.

### 유괴 예방

- ▶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새 친구,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다.
- ▶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도록 하며,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.
- ▶ 자녀의 이름, 전화번호를 옷 안, 신발 안,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써둔다.
- ▶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오게 하거나 심부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.
- ▶ 도로와 떨어져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한다.
- ▶ 통학로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준다.
- ▶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다.
- ▶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(안돼요! 싫어요! 도와주세요!)을 반복해서 지도한다.

## 3.

### 화재 예방

#### ▶ 화재발생시 대피요령

- 낮은 자세로 기어서 피난해야 합니다.
-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열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.



#### ▶ 피난을 위한 복도, 계단에 적치된 물건은 없나요?

복도, 계단 등은 화재발생 등 유사시 피난통로로 사용됩니다. 계단에 문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피난 시 장애가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옥상은 피난장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출입문은 개방하여야 합니다.

#### ▶ 가정에서 알아야 하는 상식!

가정과 차량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나요?

화재발생 등 유사시 피난대피로는 알고 있나요? 피난장소는 있나요?

1회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눌러보는 것으로도 전기화재는 예방됩니다.

가스레인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, 월 1회 누설여부를 확인하세요.

#### ▶ 작은 관심과 노력!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. 화재 신고는 ☎119